

#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1280
----------	------

2023년 11월 27일  
도시계획균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자 : 김기덕 의원 (찬성자 10명)

나. 제안일 : 2023년 10월 9일

다. 회부일 : 2023년 10월 23일

라. 상정일 : 제321회 서울시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

2023년 11월 27일 상정·의결 (원안 가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기덕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‘사회적 고립청년’ 기본계획 수립 시 현 고립청년 실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자 기본계획에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며, ‘사회적 고립청년’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‘사회적 고립청년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- ‘사회적 고립청년’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 제1항 제2호)
- ‘사회적 고립청년’ 지원 추진을 위한 ‘청년정책조정위원회’의 심의 및 자문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(안 제8조)
- ‘사회적 고립청년’ 지원정책의 시행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규정함 (안 제14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년기본법」,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)
- 다. 입법예고(2023. 10. 26. ~ 10. 30.) 결과 : 의견 없음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조성준)

### 가. 개요

- 이번 「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(이하 ‘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’)」 일부개정조례안은 ‘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’ 수립 시 실태조사 사항을 신설하고, 지원정책에 대해 ‘청년정책조정위원회’의 심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하며,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‘사회적 고립청년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, 안 제8조를 신설하여 ‘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’의 수립·변경, 지원 시책의 추진

상황 점검,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(이하 ‘청년 기본 조례’)」 제9조에 따른 ‘청년정책 조정위원회’의 심의·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‘사회적 고립청년’ 지원정책 시행에 공로가 있는 개인·기관·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2. ~ 5. (생 략)</p> <p>② ~ ③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.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</u></p> <p><u>3. ~ 6.</u> (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8조(위원회의 심의)</u>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<u>1.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</u></p> <p><u>2.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</u></p> <p><u>3.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</u></p> <p><u>4.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</u></p>
<p><u>제8조 ~ 제12조</u>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9조 ~ 제13조</u> (현행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)</p> <p><u>제14조(포상)</u>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·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을 수 있다.</p>

## 나. 검토 내용

### (1)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사항의 추가 (안 제5조제1항제2호 신설)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는 ‘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 계획’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실태조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,
- ’21.12월 「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면서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마련하였고, 이를 근거로 하여 전국 최초로 ‘고립·온둔 청년 실태조사’를 실시하여 ’22.1월 그 결과를 발표<sup>1)</sup>하였음
- 또한 지난 ’23.9월 제320회 임시회에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고립청년 실태조사 조항을 3년 주기의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「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<sup>2)</sup>이 가결되어 현재 시행 중임
- 따라서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 고립청년 실태조사를 기본계획 수립에 다시 한번 포함시키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정책 추진력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

#### 「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」

- 제7조(실태조사 등)**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  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# □ 서울시 고립·온둔청년 실태조사 개요

- 조사 기간 : 2022. 8. 22 ~ 2022. 9. 23.
- 조사 방법 : 패널조사 및 온라인조사

1) [보도자료] 전국 최초 고립온둔 청년 실태조사...3월 중 종합지원대책 추진, 2023. 1. 18., 미래청년기획단

2) 의안번호 11-1109, 박영한 의원 대표 발의 「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,  
→ 같은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, 의안번호 11-1070)과 함께 위원회 대안 (의안번호 11-1252)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였음

○ 수행 기관 : (주)피앰아이

구분	가구조사	청년 당사자 조사	심층조사
표본수	◦ 총 5,221가구 (청년 6,926명) ※ 고립은둔 지원기관 이용자 160명 포함	◦ 총 5,513명 ※ 고립은둔 지원기관 이용자 160명 포함	◦ 총 26명
대상	◦ 만19~39세 청년거주 가구 (지역, 가구원 규모, 연령 변수 고려)	◦ 만19~39세 청년 (성별, 연령 변수 고려 추출)	◦ 당사자 16명, 가족 4명, 지원단체 활동가 6명

(2) 위원회 심의 및 자문 규정 (안 제8조 신설)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는 ‘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’의 수립·변경,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,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‘청년정책조정위원회’의 심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·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「청년기본법」 제14조와 「청년 기본 조례」 제9조에 의해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‘청년정책조정위원회’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, 유사·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「지방자치법」<sup>3)</sup>의 취지에 부합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됨

**「청년기본법」**

**제14조(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)** ① 시 ·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·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.

**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**

**제9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**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·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 
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조정한다.  
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
 2.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
 3.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
 4. 청년친화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 
 5.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3) 「지방자치법」제130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·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· 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에서 「청년정책조정위원회」의 심의 및 자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「청년 기본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심의 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볼 수 있겠음
- 또한, 「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」 제5조 제3항에서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고립청년과 그 가족,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「청년정책조정위원회」의 심의와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 노력으로 인정할 수 있겠음
- 다만, 현행 「청년정책조정위원회」의 운영 및 구성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「사회적 고립청년」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은 다소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 향후 이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

#### □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현황

- 위원임기 : 2021. 10. 20. ~ 2023. 10. 19. (2년간, 1회 연임가능)
   
※ 현재 위촉직 위원 임기는 만료되어 신규 위촉을 위한 조사진행 후 2024년 위촉 예정
- 구성인원 : 19명(당연직 5, 위촉직 14)
  - 당연직(5) : 서울시장, 미래청년기획단장, 경제일자리기획관, 문화본부장, 주택정책실장
  - 위촉직(14): 시의원, 청년정책 전문가, 기업인, 스포츠선수, 대학생 등

위원명	주요경력	분과	비고
1 김영철	• (현) 서울특별시의회 의원	일자리	
2 김용일	• (현) 서울특별시의회 의원	주거	
3 이병도	• (현) 서울특별시의회 의원	복지·참여	
4 김만기	• (현) 퓨처잡 대표이사, 숙명여대 겸임교수	일자리	공동위원장
5 김수영	• (현)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	교육·문화	
6 유민상	• (현)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 연구위원	복지·참여	
7 김주현	• (현) (주)에스와이오 경영지원본부 이사	일자리	
8 정아영	• (현) 한국장애인연맹(DPI) 정책위원	복지·참여	
9 김지선	• (현)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위원	주거	
10 한진석	• (현)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생	교육·문화	
11 박유빈	• (현)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팀장	복지·참여	
12 유용재	• (현)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대학원생(석사박사통합과정)	일자리	청년명예시장
13 이다빈	• (현) 서울시청 태권도부 선수(국가대표)	주거	
14 김동민	• (현)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대학생	주거	

### (3) 포상 규정 (안 제14조 신설)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는 ‘사회적 고립청년’ 지원정책 시행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,
-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「청년기본법」 제26조에서는 청년 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, 「청년 기본 조례」 제24조에도 청년 발전에 관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
- ‘사회적 고립청년’이 새로운 청년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를 격려하는 측면에서 포상 규정 신설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,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

#### 「청년기본법」

**제26조(포상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.  
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
####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

**제24조(포상)**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## 다. 종합 의견

- 이번 「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에서 ‘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’ 수립 시 ‘사회적 고립청년’ 실태조사를 추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객관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는 「청년 기본 조례」 제9조에 따른 ‘청년 정책조정위원회’의 심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‘사회적 고립청년’ 지원 추진 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. 다만, ‘청년정책조정위원회’ 위원들이 ‘사회적 고립청년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에서는 ‘사회적 고립청년’ 지원정책 시행에 공로가 있는 개인·기관·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사회문제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를 격려하여 정책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‘사회적 고립 청년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의미,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, 관련 법령과 근거를 살펴보았을 때 개정 내용도 적절하다고 판단됨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**6. 토론요지: 없음**

**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**

**8. 소수의견의요지: 없음**

**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**

#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### (김기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280
----------	------

발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09일  
발의자: 김기덕 의원(1명)  
찬성자: 김영철, 김원태, 남창진,  
민병주, 박승진, 왕정순,  
우형찬, 이영실, 이원형,  
홍국표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사회적 고립청년 기본계획 수립 시 현 고립청년 실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자 기본계획에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며,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)
-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(안 제8조)
-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규정함 (안 제14조)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청년기본법」,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등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기타 : 별도 작성내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2.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

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8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심의)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 · 변경
2.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
3.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
4.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

제14조(포상)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 · 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</b> 시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 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〈신 설〉</u></p> <p>2. ~ 5. (생 략)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<b>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</b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</p> <p>3. ~ 6. (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8조(위원회의 심의)</b>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9조에 따른</p>

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
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  
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 · 변경
2.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 
추진 상황 점검
3.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 
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
4.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 
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

제8조 ~ 제12조 (생략)

<신설>

제9조 ~ 제13조 (현행 제8조부터  
제12조까지와 같음)

제14조(포상)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 
지원정책의 시행에 현저한 공로  
가 있는 자 또는 기관 · 법인 및  
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문서번호

2023100600000014

## 미첨부사유서(2호)

요청인 : 김기덕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  
이정수 팀장  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06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회신일 : 2023.10.10.

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목 차

- 비용발생 요인
- 미첨부 근거 규정
- 미첨부 사유
- 작성자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제2호 실태조사, 제14조(포상)를 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※ 단, 실태조사는 제7조에 따라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(2호)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  -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(포상)를 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 
담당관 오희선  
추계세제팀장 이정수  
주무관 김지혜  
☎ 02-2180-7953  
e-mail : kjh0123@seoul.go.kr